

우석대학교 유연학기제운영규정 제정 사유서

1. 제정 규정 명칭

제정	○ 유연학기제운영규정
----	-------------

2. 개정사유

- 학생의 교육 수요 및 대외 교육 환경의 급변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유연학기제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붙임

제정	○ 유연학기제운영규정
----	-------------

유연학기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 학칙 제11조3항 유연학기제(이하“유연학기”이라 한다)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연학기”라 함은 교과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부) 및 학년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학기를 말한다.

제3조(신청및승인) ①유연학기는 학과의 교육과정연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유연학기운영계획서’를 교무학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②유연학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강의계획서) 유연학기로 허가된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에 내용을 명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 유연학기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수업일수 및 학점) ①수업일수는 2주 이상으로 한다.

②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당 이수시간은 1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취소) 유연학기 운영으로 인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